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무순위(사후) 1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준공된 아파트로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 옵션을 승계하는 조건인 바, 청약 시 이 점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 031-613-6313)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없음 (최초 당첨자 발표일 (2020.09.16.)로부터 6개월이나 기간 만료)	3년	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0.08.19.(수)	2025.10.14.(화)	2025.10.20.(월)	2025.10.23.(목)	2025.10.28.(화)	2025.10.30.(목)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 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무순위)	O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사항

- 본 아파트는 건본주택 운영이 종료되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공사 및 발코니 확장시 제공 품목,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시공이 완료됨에 따라 모두 수락하는 조건으로만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하오니 이점 청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급계약 체결 후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 품목의 추가, 변경 또는 취소는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계약 체결 후 정해진 기간 내에 계약금, 잔금 순으로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입주한 때로부터 3년간 거주무기간이 적용됩니다. 거주무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매제한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본 아파트를 양도(매매, 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은 제외) 할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0.14.(화)**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591019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8.19.(수)**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0001001**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 단지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025.10.20.(월)	2025.10.23.(목)	2025.10.28.(화)	2025.10.30.(목)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사업주체 분양사무소 (주소: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9 어반그로브물 2층 2123호)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신청자 및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상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확인하며,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이하 같음)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거알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다.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등을 매대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유주택자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청약 제한 기간[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적격당첨된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1년] 내에 있는 분, 동일주택 기당첨자, 공급 질서교란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평택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0.09.16.)로부터 6개월 적용되며, 기산일 기준 제한기간이 초과되어 현재 전매 가능합니다.

■ 주택법 제57조의 2 의거하여 계약자는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가능일(2024.05.27.)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고, 실입주일로부터 3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9, 힐스테이트 고덕 스카이스티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49층 3개동 총 6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계약 이후 잔여 2세대
- 입주시기 : 2025.11월 예정(잔금 납부 후 즉시 입주가능)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2025910194	01	076.3622	76	76.3622	29.0023	105.3645	42.5171	147.8816	28.9597	1	1
	02	084.1820	84	84.1820	31.7446	115.9266	46.8711	162.7977	31.9253	1	1
	합 계									2	2

■ 공급금액 표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동호	층구분	세대수	분양가격				계약금	잔금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76	0103-1002	10층	1	188,558,510	246,911,490	-	435,470,000	43,547,000	391,923,000
84	0101-2802	28층	1	217,529,480	283,690,520	-	501,220,000	50,122,000	451,098,000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되어 아파트 공급금액 외에도 기 시공된 발코니 확장, 플러스 옵션, 가전 옵션 금액을 모두 납부하셔야 합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형 표기방식을 주거전용면적으로 표기하였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 면적합산 시 소수점 자리에서 단수조정으로 계산한 값이 적용되어 소수점 자리로 산정하였으며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 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세대별 대지 지분은 공동주택의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으로 납부하며 잔금은 실입주일(키불출일 또는 입주증 발급일 중 빠른 날)전에 완납하셔야 합니다. 잔금 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합니다.(잔금 연체로 인한 연체료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 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입주 단지로 중도금은 없으며 입주기간 내 잔금을 납부 하여야 하며, 청약전 본인의 대출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 이후 개인별 대출한도·대출불가, 자금사정 등의 사유로 계약해제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급 금액 납부 일정

-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에 따른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8.19.)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약식표기	동호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76	0103-1002	6,890,000	689,000	6,201,000
2	84	0101-2802	8,170,000	817,000	7,353,000

■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포함) 공급 금액 납부 일정

- 플러스 옵션(가전 옵션 포함)의 비용은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 비용과 별도로 부담해야하며, 해당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정상 가전옵션 선택품목의 설치가 완료되어 상기 가전옵션에 대한 계약이 필수이며, 기 설치된 가전옵션 외에 품목의 추가 및 기존계약의 변경이 불가합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설치가 완료된 품목이므로 계약체결 이후 계약해제는 불가합니다.
- 상기 가전옵션 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세 내용은 가전옵션 선택품목 계약서에 기재하오니 계약체결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에 가전옵션 선택품목 관련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08.19.)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원)

구분	약식표기	동호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	잔금
					10%	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	76	0103-1002	시스템 에어컨(총4개소) 거실1, 침실1, 2, 3	6,380,000	638,000	5,742,000
			개별선택_현관창고도어+시스템선반	770,000	77,000	693,000
			개별선택_76_복도장	1,110,000	111,000	999,000
			개별선택_76_엔지니어드 스톤(주방 벽, 상판/아일랜드식탁)	4,430,000	443,000	3,987,000
			플러스 유상옵션_76_드레스룸 가구, 화장대(좌식)	2,480,000	248,000	2,232,000
			소계	15,170,000	1,517,000	13,653,000
2	84	0101-2802	거실아트월 세라믹타일	1,770,000	177,000	1,593,000
			바닥마감_84_폴리싱타일(복도, 거실, 주방)+침실(강마루)	1,470,000	147,000	1,323,000
			기능성오븐_일반(삼성_HSB-N361B	370,000	37,000	333,000
			공통선택품목(84)			
			①신발장 ②발코니2 시스템선반,발코니1 빨래건조대	6,370,000	637,000	5,733,000
			③주방벽/상판 엔지니어드 스톤, 아일랜드식탁(엔지니어드 스톤)			
			④거실 뒷벽1개소, 복도 1개소 픽처레일			
			플러스 유상옵션_84_현관중문, 현관에어샤워, 빌트인 클리너,	2,910,000	291,000	2,619,000
			미세먼지저감방충망(주방, 거실)			
			플러스 유상옵션_84_H 드레스웨어	3,030,000	303,000	2,727,000
			플러스 유상옵션_84_침실2불박이장, 침실3불박이장	2,150,000	215,000	1,935,000
			소계	18,070,000	1,807,000	16,263,000

■ 공급대금,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가전포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아파트 분양대금	하나은행	591-910068-32604	(주)하나자산신탁
balcony확장 / 플러스옵션(가전포함)	신한은행	56214577168862	현대건설(주)

- ※ 모든 공급금액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해야하며, 현금 수납은 불가합니다.
- ※ 상기 공급금액에는 세대별 인지세,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계약금, 잔금에 대하여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공급금액(분양대금) 및 balcony 확장공사 및 플러스옵션(가전포함) 납부계좌는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충분히 확인하고 납부해야 하며, 상기 항목별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 입금하시고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입금 예시 : 0101동 3602호 당첨자가 홍길동인 경우 입금자명 '01013602홍길동')
-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에는 공급대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 등의 처리가 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모든 공급금액 중 계약금, 잔금은 약정된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람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회차별 지정 계약 기간 내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추후 통보)
- ※ 잔금 납부기일 이전 선납을 하는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본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또는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사본 첨부)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 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공급계약에 따른 인지세와 balcony 확장 계약 등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따른 인지세를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이며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 등기(최초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 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10.23.(목) ~ 2025.11.01.(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5.10.23.(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025.10.30.(목) 10:00~17: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시 대리 계약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체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배우자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	해외 근무자 단순부임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에 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무주택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시 추가서류		○	사업주체 요구 서류	-	•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 "자격서류확인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불가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일시 : **2025.10.30.(목)** 동·호 배정 후 즉시 계약, 정확한 계약체결 일시는 예비 당첨자에게 추후 안내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20.08.19.)을 확인하시어 모든 유의사항 및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주택은 공사 완료된 단지로서, 기 설치된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에 대해 추가 · 변경 · 취소 등을 요구하실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아파트는 준공 및 입주 완료되었으므로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등 시공상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잔금 지급 전 하자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 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차량 진출입구 및 주차통로는 2.7m 이상, 주차구획은 2.1m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_지하 2층)
-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등
- **교육시설 관련**
- ※ 본 아파트는 울포초 통학구역에 해당되며 입주 초등학생은 울포초에 배치 예정임
- ※ 본 아파트 입주 중학생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중학교에 배치될 예정이며, 민세중, 해창중, 고덕9중(2027. 3. 개교 예정)이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은 컴퓨터 전산 추첨 방식으로 지정되며, 중학군(구)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배정일정 및 방법은 경기도평택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아파트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와 설립이 확정되어 추진 중인 4교((가칭)용죽고 2026.3. 개교 예정, (가칭)화양2고 2027. 3. 개교 예정, (가칭)고덕6고 및 송담고 2028. 3. 개교 예정)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 계획된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에서 승인되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공동주택 인근의 모든 학교(공립단설유치원 포함) 용지가 설립이 확정된 것은 아니며,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 또는 해제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 바랍니다.
- ※ 현재까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이 확정된 학교는 아래와 같으며, 개교예정시기는 기상상황, 공사추진일정, 기타 등의 사유로 변경될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학교명	개교(예정)시기
유	평택고덕유(고덕2유)	2021. 3.
	함박유(고덕8유)	2021. 9.
	울포숲유(고덕1유)	2025. 3.
초	울포초(고덕1초)	2023. 9.
	종덕초(고덕2초)	2020. 3.
	민세초(고덕4초)	2024. 9.
	고덕초(고덕10초)	2022. 3.
	해창초(고덕11초)	2024. 9.
	고덕함박초(고덕13초)	2025. 3.
	(가칭)고덕3초	2028. 3.
	민세중(고덕3중)	2023. 3.
	해창중(고덕8중)	2024. 9.
중	(가칭)고덕9중	2027. 3.
고	송탄고(고덕3고)	2025. 3.

※ 단지 인근 학교설립으로 인하여 인접동의 경우 학교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사업자등록번호
건축	(주)케이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882,861,400 (VAT포함)	127-81-60942
전기	(주)선진이엔지	1,095,430,818 (VAT포함)	607-81-75558
소방/통신	(주)서광이에프	682,000,000 (VAT포함)	232-81-01003

■ 친환경 건축물 성능수준 표기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에너지기가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2항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 ②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와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시행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이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이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유리치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주)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본 모집공고 및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문의 : 031-613-6313 (평일 10:00~16:00, 주말·공휴일·점심시간(11:30~13:00)제외 /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연결이 지연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분양사무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s://www.urich.co.kr>)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건본주택 위치 :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대로 99 어반그로브몰 2층 2123호
- 분양 문의 : 031-613-6313